

1. 개정 이유

하반기 경제정책방향(6.1), 소부장 2.0 전략(7.9)등에서 발표된 국내복귀기업 지원 방안의 시행을 위해 동법령을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연구시설의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신설 (현행 제3조)

- 1) 하반기 경제정책방향(6.1) 등에서 R&D 센터 등 연구시설의 해외 사업장 규모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차등 적용 방안을 발표
- 2) 이에, 하경정 발표 내용과 같이 ❶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, ❷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 이하, ❸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는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 이하, 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신설
- 3)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축소 기준 신설을 통해 기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업종의 수월한 국내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나.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지표 추가 (별지제3호서식)

- 1) 하반기 경제정책방향(6.1) 및 소부장 2.0전략(7.9)에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의 다양화 방안을 발표
- 2) 현재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을 ‘매출액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품목, R&D 센터 등 연구시설에 적용하기 곤란. 이에 ‘경상연구개발비’, ‘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’ 및 ‘축소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을 구성하는 생산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생산품의 생산량’을 해외사업장 축소를 판단하는 생산량 기준으로 추가
- 3) 다양한 기업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국내복귀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
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인 경우

2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·증설하는 기업의 경우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: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

나.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

발비 규모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: 해외사업장의
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
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85퍼센트
이하인 경우

다.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
발비 규모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: 해외사업장의
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
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의 90퍼센트
이하인 경우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------	-----	----------

개요

신청일시	20 년 월 일		
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일		20 년 월 일	
축소 대상	사업장명		
해외사업장	소재지		

생산량 축소

①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 또는 축소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 연간 생산량	기 간	. . . ~ . . .
	생 산 량	
②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 또는 축소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연간 생산량	기 간	. . . ~ . . .
	생 산 량	
축소 비율 = (① - ②) ÷ ①		%

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

신청인(신고인) 제출서류	1.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. ‘생산량’에 ‘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의 생산량’을 기입하는 경우, 해당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생산량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‘생산량’은 재무제표 상 ‘매출액’ 또는 축소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을 구성하는 생산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생산품의 ‘생산량’을 기입합니다.
- 축소의 기준을 ‘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’로 적용하는 경우,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상 경상연구개발비를 기입합니다.
- 축소의 대상이 된 해외사업장 관련 사항을 기입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결정	➔	선정확인서 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해외사업장 축소·의 기준)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해외사업장의 축소·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·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.	제3조(해외사업장 축소·의 기준)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해외사업장의 축소·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이 축소·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퍼센트 이하인 경우 2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·증설하는 기업의 경우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국내·보급기업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 규모가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: 해외사업장의 축소·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가 축소·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

② (생략)	<u>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</u> <u>나.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</u> <u>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</u> <u>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초</u> <u>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: 해외</u> <u>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</u> <u>1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</u> <u>발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</u> <u>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</u> <u>비의 85퍼센트 이하인 경우</u> <u>다. 국내복귀기업 선정일이</u> <u>속하는 연도의 해외사업장 경상</u> <u>연구개발비 규모가 1000억원을</u> <u>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: 해외사</u> <u>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</u> <u>년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</u> <u>비가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</u> <u>간 해외사업장 경상연구개발비</u> <u>의 90퍼센트 이하인 경우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-